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 월 13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56호

붙임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우대)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1. 문화·체육시설
2. 공영주차장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③ 시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을 규칙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7조(자원봉사자 우대) ① 시장은</u> <u>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u> <u>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u> <u>적 보상과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u> <u>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u> <u>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u> <u>공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u> <u>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u> <u>준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u></p> <p>1. <u>문화·체육시설</u> 2. <u>공영주차장</u> 3. <u>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u></p> <p><u>③ 시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u> <u>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u> <u>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u> <u>우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을 규칙</u> <u>에 따른다.</u></p> <p><u>④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u> <u>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7조 ~ 제20조 (생 략)</u></p>	<p><u>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7조</u> <u>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u></p>		